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8. 4. 20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4.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98.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응국)

가. 제안이유

- 98. 1. 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 기준을 정하고
- 주민지원기금 조성기준을 관련법에 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

나. 주요골자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구분 산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명시(안 제3조제2항)
- 출연금 조성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소각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6조제1항, 제3항)
-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사업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 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안 제3조제2항제2호중 폐기물소각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이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1톤당 80㎡, 퇴비·사료화시설의 경우 70㎡인데, 퇴비·사료화시설 설치의 부지면적은 어떻게 해서 10㎡ 작은가?	○ 전체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며, 음식물 처리시설물 용량에 맞는 부지면적이 70㎡임.
○ 소각시설 부지면적 확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근거 조항이 있음
○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삼정동 주민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더 지원해 주는가?	○ 1억 4000만원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중동소각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의 지원금은 있어야 하고
- 상동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6호
의결년월일	98. 5. 2 (제60회)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98. 1. 1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정하고

- 주민지원기금 조성기준을 관련법에 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

□ 주요골자

-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로 구분 산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명시(안 제3조제2항)
- 출연금 조성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소각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조정(안 제6조제1항, 제3항)
-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사업 결정,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대상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사항 삭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다음에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삽입한다.

제3조의 제목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유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계획원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원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계획원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원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본문중 “영 제5조제3호”를 “영 제6조제3호”로 하며, “100톤”을 “50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중 정기출연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백만원으로 하되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며, 최초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

$$\text{출연금} = \frac{\text{소각시설용량(톤/일)}}{100(\text{톤/일})} \times \frac{\text{간접영향권내세대수}}{1,000\text{세대}} \times \text{적용계수}$$

③제1항제2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을 말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①부천시에서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①----- ----- ----- -----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유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3. 폐기물소각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4.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 영 제6조제3호----- -----50톤 -----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2.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현행	개정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최초 출연금”이라 하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 $\text{출연금} = \frac{\text{소각시설용량(톤/일)}}{100(\text{톤/일})} \times \frac{\text{간접영향권내거주세대수}}{1,000(\text{세대})} \times \text{적용계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중 정기 출연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백만원으로 하되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며, 최초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 $\text{출연금} = \frac{\text{소각시설용량(톤/일)}}{100(\text{톤/일})} \times \frac{\text{간접영향권내거주세대수}}{1,000(\text{세대})} \times \text{적용계수}$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수익금”이라 함은 당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지역난방 열원 또는 전기로 전환하여 판매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금 총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 비용을 말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금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사업 결정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3조제1항 별표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u>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시장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결정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u> <u>1.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선정된 주민대표 중에서 호선한다.</u> <u>2. 주민대표의 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주민대표를 선정한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는 30일 이내 주민대표를 재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재선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3. 주민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삭제)
<u>제11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폐기물 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u>	(삭제)
<u>제12조 ~ 제13조(생략)</u>	<u>제9조 ~ 제10조(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u>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부천시에서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유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

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중 정기출연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백만원으로 하되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며, 최초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

$$\text{출연금} = \frac{\text{소각시설용량(톤/일)}}{100(\text{톤/일})} \times \frac{\text{간접영향권내세대수}}{1,000\text{세대}} \times \text{적용계수}$$

③제1항제2호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을 말한다.

④삭제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 실·과·소장이 된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기금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97. 4. 21일부터 적용한다.

사료화시설 톤당 소요부지 면적 산출

□ 적용기준

- 부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사료화설비 면적 적용
- 시설규모 : 50톤/일
- 건축면적(A) : $34.5\text{m} \times 21\text{m} = 724.5\text{m}^2$

□ 건폐율 20/100 적용시 소요부지 면적 산정

○ 소요부지 면적 : $724.5\text{m}^2 \times 4 = 2,898\text{m}^2$

□ 1톤당 소요부지 면적

○ $A = 2,898\text{m}^2 \div 50\text{톤/일}$

$= 72.45\text{m}^2$

$\approx 70\text{m}^2$ 적용

※ 30톤 사료화시설 건설시 최저 소요부지면적은 $70\text{m}^2/\text{톤} \times 30\text{톤/일} = 2,100\text{m}^2$ 가 필요함